

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 (정재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5.

발 의 자 : 정재환, 홍영진, 이명녀
강혜순, 안영호, 문희성
박경흠, 김도운, 문기호
김태욱

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(안 제4조)
- 다. 업무의 위탁(안 제5조)
- 라.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(안 제6조 ~ 제9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관련법규

- 가.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, 제8조
- 나.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
- 다.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3. 8. 17. ~ 8. 24.(8일간)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)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
2.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
3. 이스포츠 저변 확대·활성화 지원
4.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
5.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
6.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지원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

1.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
2.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
3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「이스포츠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방 이스포츠의 진흥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,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·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자금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, 이스포츠 단체,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
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이스포츠법」 시행령

제8조(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□ 「이스포츠법」 시행규칙

제3조(이스포츠대회의 육성·지원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1.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
2.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
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

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 불가

3. 작성자

- 소 속: 문화관광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심명희
- 연락처: 052-290-3662